



이민 관련 불공정 고용 관행 특별 조사국

미국 법무부 인권국

E-Verify 고용주의 의무 사항 및 금지 사항

의무 사항

- E-Verify를 통해 신규 채용 직원의 취업 자격 확인
- 국적이거나 시민권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해 E-Verify 사용
- I-9 양식을 작성한 후에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해 E-Verify 사용
- 피고용주에게 신속하게 잠정 미확인 통지(TNC) 전달
- 잠정 미확인 통지(TNC)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로 한 피고용주에게 신속하게 SSA 또는 DHS로 제출할 신청서 제공
- 잠정 미확인 통지(TNC)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피고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
- 고용자들이 E-Verify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고지 사항 및 OSC에서 발급한 차별 금지문 게시
- E-Verify에 접속하는 데 사용하는 피고용자의 암호를 비롯한 비공개 개인 정보의 보안 유지

금지 사항

- 현재 직원의 취업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E-Verify 사용
- 신규 채용 직원이나 현재 직원들이 미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법적 인가를 받지 않았는지 모른다는 “의심”이나 국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E-Verify 사용
- 채용 지원자를 사전 선별하기 위해 E-Verify 사용
- 피고용자가 잠정 미확인 통지(TNC)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강요
- 최종 미확인(Final Nonconfirmation)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나 또는 받기 전에 잠정 미확인 통지(TNC)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피고용주를 해고하거나 다른 부당한 조치 수행
- SSA 또는 DHS에 피고용주에 대해 조회할 때 피고용자에게 해당 기관에서 출력물이나 기타 서면 확인서를 가져오도록 요구
- 피고용주에 대해 잠정 미확인 통지(TNC)를 받은 후에 해당 피고용주에게 다른 취업 자격 증명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
- E-Verify의 사진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특정 서류 요구

자세한 내용은 OSC Employer Hotline(1-800-255-8155)으로 문의해 주십시오.

청각 장애인을 위한 TDD: 1-800-237-2515

www.usdoj.gov/crt/osc